

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청구의 변경) ①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소청심사가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소청 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④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⑤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, 지체 없이 당사자들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⑥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소청심사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소청심사가 청구된 것으로 본다.

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결정기간의 산정은 그 허가한 날부터 기산한다.

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제1항 후단 중 “다시 심사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”를 “의결을 거쳐(또는 위원장은) 심사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녹화 등의 금지) 누구든지 심사회의장 안에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등 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
2.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
3.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소청심사 청구의 경우
4.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**조서**”를 “**조서(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)**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**재적위원 과반수의**”를 “**출석위원 과반수의**”로, “**재적위원 과반수에**”를 “**출석위원 과반수에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**제2항제3호**”를 “**법 제10조제2항제3호**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,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재임용 거부 처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적용 및 재임용 절차 등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임용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끝내

야 한다.

⑦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심사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.

⑧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
제24조 중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”로 한다.

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소청자료의 목적 외 이용금지) 누구든지 소청기록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5조(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소청심사청구 등)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소청심사청구서를 「행정심판법」 제5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「행정심판법」 제5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1.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및 송부
2. 피청구인의 답변서, 입증자료 및 추가 제출자료 접수 및 송부
3. 결정서 송부
4. 그 밖에 교원소청 심사 절차의 수행에 관한 사항

③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소청심사 절차의 수행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6조(법원 판결에 따른 재심사) ①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재심사하여야 한다.

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건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재심사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7조(권한의 위임)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교원소청심사청구서(이하 “청구서”라 한다)의 보정에 관한 사항
2. 교원소청심사결정서(이하 “결정서”라 한다)의 단순 오기 또는 착오의 경정에 관한 사항
3.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(이하 “소청사건”이라 한다)의 심사기일 지정 및 연기에 관한 사항
4. 소청사건의 취하에 관한 사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청구의 변경) ①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<u>②소청심사가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소청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<u>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</u> <u>④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</u> <u>⑤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, 지체 없이 당사자들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</u> <u>⑥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소청심사가 청구되었을 때부</u>

<신 설>

제9조(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)
①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 사건(이하 “소청사건” 이라 한다)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(이하 “당사자” 라 한다)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심사일시 등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연기를 요청할 수

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
의한 청구변경을 허가하는 경우
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
의한 소청심사 결정기간의 산정
은 그 허가한 날부터 기산한다.

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.

①

----- 의결을 거
쳐(또는 위원장은) 심사일시를

있고, 심사위원회는 다시 심사
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
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
다.

②·③ (생략)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
피)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
사·결정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
자이었던 자가 당해 소청사건
의 당사자가 된 경우

2.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의 당
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
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
우

3.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
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
을 한 경우

4.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
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
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
5. 위원이 당해 소청심사청구의
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

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

연기할 수 있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에게 심사·결정의 공정을 기대
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
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
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·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3조(청구인 등의 진술) ①심사
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
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
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
한다. 다만, 소청심사청구기간
의 경과 등 소청심사의 청구가

제11조의2(녹화 등의 금지) 누구든지 심사회의장 안에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제13조(청구인 등의 진술) ①-----

다만,
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자
의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

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때
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
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
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때
는 당사자의 서면진술만으로 결
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④ (생략)

제15조(조서작성) 심사위원회는
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관한 조
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심사위원회의 결정) ①소
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

있다.

1.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등
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
각하결정을 하는 경우

2.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
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
여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
경우

3.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
하는 소청심사 청구의 경우

4.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
경우
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경우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조서작성) -----
----- 조서
(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
함한다)-----.

제16조(심사위원회의 결정) ①--

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
되,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
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
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
까지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
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
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
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.

②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
같이 구분한다.

1.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것
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
다.
2.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
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
각한다.
3.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
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
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
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
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
변경을 명한다.
4.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
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
청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

----- 출석위
원 과반수의 -----

----- 출석위원 과
반수에 -----

<삭 제>

하는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.

5.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명한다.

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,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끝내야 한다.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③법 제10조제2항제3호 -----

-----.

<후단 삭제>

<신 설>

④ · ⑤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19조(결정서의 송부) ① · ②
(생 략)

<신 설>

④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재임용 거부 처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적용 및 재임용 절차 등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임용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끝내야 한다.

⑤ · 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⑦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심사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.

⑧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19조(결정서의 송부) ① · ②
(현행과 같음)

③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서가 청구

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(訴請審査)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
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

----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--
-.

제24조의2(소청자료의 목적 외 이용금지) 누구든지 소청기록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5조(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소청심사청구 등)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소청심사청구서를 「행정심판법」 제5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「행정심판법」 제5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

<신 설>

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1.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및 송부

2. 피청구인의 답변서, 입증자료 및 추가 제출자료 접수 및 송부

3. 결정서 송부

4. 그 밖에 교원소청 심사 절차의 수행에 관한 사항

③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소청심사 절차의 수행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6조(법원 판결에 따른 재심사)

①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재심사하여야 한다.

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건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재심사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7조(권한의 위임) 위원회는 위
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
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
있다.

1. 교원소청심사청구서(이하
“청구서”라 한다)의 보정에
관한 사항

2. 교원소청심사결정서(이하
“결정서”라 한다)의 단순 오
기 또는 착오의 경정에 관한
사항

3.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(이하
“소청사건”이라 한다)의 심
사기일 지정 및 연기에 관한
사항

4. 소청사건의 취하에 관한 사
항